

인천광역시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06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우리나라는 출산·양육에 대한 비용부담 등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하여,
- 나. 2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·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임(안 제3조)
- 나. 지원내용은 월 5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함(안 제3조)
- 다. 양육지원금은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인천광역시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출산가족의 영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아”란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.
2. “양육지원금”이란 영아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금전지원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·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양육지원금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둘째아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
2. 쌍생아 이상을 출산·양육하는 보호자

제4조(지원내용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,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(“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0~1세 아동”을 말한다)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쌍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함께 태어난 출생아 모

두에게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.

제5조(비용의 분담) 양육지원금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군·구가 50:50으로 부담한다.

제6조(양육지원금 신청 등) ① 양육지원금은 보호자가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양육지원금 지급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한다. 다만, 2010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.
③ 그 밖에 신청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양육지원금의 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한다.

1. 지원대상자가 타 시·도로 전출한 경우
2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8조(양육지원금의 환수 등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<p>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</p> <p>○ 제8조제1항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상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○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없음”